하남시 덕풍청소년문화의집 운영·관리 민간위탁 동의안

의 안 번 호 **3030**

제출연월일 : 2025. 1. .

제 출 자:하남시장

1. 위탁사무명 : 하남시 덕풍청소년문화의집 운영 · 관리

- 2.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
 - 추진근거
 - 「하남시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」제6조
 - 「하남시 사무위탁 조례」제4조
 - 추진 필요성
 - 청소년기본법 제18조 및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에 따라 설치된 『하남시 덕풍청소년문화의집』의 관리 및 운영에 있어, 청소년 단체 또는 법인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기 위하여 『하남시 사무위탁 조례』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자 함

3. 위탁사무 내용

- 하남시 덕풍청소년문화의집 운영
 - 청소년의 지도의 능력개발을 위한 각종 교육, 연수에 관한 사업
 - 청소년 수런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
 - 청소년을 위한 문화 활동 및 체육 활동 사업
 - 건전한 청소년 육성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
 - 그 밖에 하남시 덕풍청소년문화의집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

4. 위탁시설 개요

덕풍청소년문화의집

소재지	하남시 덕풍공원로 12			
규 모	708㎡(덕풍2동행정복지센터 3~4층)			
인 력	계	관장	청소년수련관	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
	9	1	5	3
이용인원	청소년이용인원 : 연간 58,238명(2023년) / 61,313명(2024년)			

5. 민간위탁기간 : 위수탁 협약일로부터 3년

※「하남시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」제6조

6. 수탁자 선정방식

- 공개모집을 통한 수탁자 모집
- 수탁자 선정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선정(9명이내)

7.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

구 분	2025년 예산액	산출근거
계	985,907천원	인건비: 313,699,720원*1식 사업비: 336,450,000원*1식 물건비: 66,872,470원*1식 경상이전: 68,884,970원*1식 특별조정교부금: 200,000,000원*1식

8.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

-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 제4조제3호의 **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**에 해당 ※청소년 사업
- 청소년문화의집 사업 운영의 능률성 극대화와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민간위탁 운영하여 사업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 내실화 도모

9. 성과평가 결과 : 2월 성과평가 실시 후 제출 예정

10. 향후 추진계획

- 민간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 : 2025. 5월 중
- 계약체결 : 2025. 7월 중

11. 관련 법령 및 조례 : 붙임 1

관련 조례

하남시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

[시행 2023. 5. 1.] [경기도하남시조례 제2168호, 2023. 5. 1., 일부개정]

경기도 하남시(청년일자리과), 031-790-5477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이 조례는 「청소년 기본법」제18조 및 「청소년활동 진흥법」제11조에 따라 청소년들의 수련활동 과 정서함양 등 건전한 청소년의 육성을 위하여 하남시 수련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- 1. "청소년 수련시설"(이하 "수련시설"이라 한다) 이란 청소년 활동 및 육성을 위하여 하남시(이하 "시"라한다)가 「청소년활동 진흥법」제11조에 따라 설치·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.
- 2. "위탁"이란 수련시설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무를 「청소년 기본법」제18조제3항 및 「청소년활동 진흥법」 제16조 따라 청소년단체에 맡겨 운영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.
- 3. "위탁운영자"란 제3조제2항에 따라 수련시설 운영을 위탁받은 청소년단체를 말한다.
- 4. "수련시설 운영자"란 수련시설을 운영하는 하남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 또는 위탁운영자를 말한다.
- 5. "이용료"란 수련시설을 이용하거나, 수련시설의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받은 비용을 말한다.

제2장 수련시설의 설치 · 운영

제3조(시설의 명칭과 운영)① 시장이 설치·운영하는 청소년 수련시설은 별표 1과 같다.

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제1항 수련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소년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제4조(사업)(1) 청소년수련관(이하"수련관"이라 한다)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- 1. 청소년의 지도와 능력개발을 위한 각종 교육, 연수에 관한 사업
- 2. 청소년 수련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
- 3. 청소년을 위한 문화 활동 및 체육 활동 사업
- 4. 건전한 청소년 육성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
- 5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- ② 청소년문화의집(이하"문화의집"이라 한다)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- 1. 청소년의 건전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운영
- 2. 청소년의 정보·문화·예술 활동에 관한 정보 및 공간 제공
- 3. 청소년의 상담 및 지도
- 4. 건전한 청소년 육성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
- 5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제**5조(수련시설 운영의 원칙)**① 시장은 수련시설의 설치 목적에 따라 적합하게 운영하여야 하며, 수련시설 이용자에게 공정한 이용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수련시설을 운영할 때 지역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일반 시민도 수련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하되, 청소년에게 이용의 우선권을 부여하여야 한다.

제3장 수련시설 운영의 위탁

제6조(수련시설 민간위탁 선정 등)① 시장은 수련시설 운영을 위탁 받을 청소년 단체를 선정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,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.

- 1.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· 장비 · 시설 및 기술수준
- 2.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타당성

- 3. 책임능력 · 공신력 및 재정적인 부담능력
- 4. 위탁사무관련 분야에 대한 경험 ·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등
- ② 수련시설 운영을 위탁 받은 청소년 단체(이하"위탁운영단체"라 한다)의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. 이 경우, 재계약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, 위탁운영단체는 위탁기간 만료 6개월 전까지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.
- ③ 위탁에 관하여는 관계법령을 따르되, 관계법령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「하남시 사무위탁 조례」를 따른다. <다른조례의 개정 2023.5.1.>

제7조(위탁운영단체 운영지원)시장은 위탁운영단체가 수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할 경우에는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및 「하남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」등 관계법령에 따라 공유재산 사용 및 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제**8조(수련시설 운영 위탁계약의 해지 등)**시장은 위탁운영단체가 「청소년활동 진흥법」제16조의2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
제**9조(위탁운영자의 운영규정 등)**① 위탁운영자는 수련시설 별로 조직, 인사, 보수, 재산·물품관리, 안전관리, 사무의 처리절차·기준이 포함된 운영기준을 정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② 위탁운영자는 예산의 변동을 수반하는 청소년 수련시설의 조직 및 배치근무 인력을 조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제10조(위탁운영자의 사업)① 위탁운영자는 청소년의 정서지도와 심신수련 및 청소년 건전 육성에 노력하여야 하며, 보조금 및 운영재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.

- 1. 수련시설 내 각종 시설물 등의 유지·관리
- 2.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체험활동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
- 3. 청소년의 자치·자율 활동의 지원
- 4. 청소년의 자질 향상과 역량개발의 지원
- 5. 지역 청소년문화 활성화 지원
- 6. 학교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
- 7. 청소년의 상담 및 지원
- ② 위탁운영자는 매년 수련시설 사업운영 계획을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.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제**11조(위탁운영자의 의무)**① 위탁운영자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 따른 협약사항이나 명령, 처분 및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
② 위탁운영자는 수련시설과 장비 등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고,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하며, 시설물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 할 때에는 미리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제12조(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 등)① 위탁운영자는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를 「청소년활동 진흥법」제14조 및 제1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선임하여야 한다.

② 수련시설 운영대표자는 청소년 지도사 및 청소년 상담사 자격을 갖춘 사람을 수련시설 종사자로 임용하고, 그 임용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제13조(위탁운영자에 대한 지도·감독 등)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위탁운영자에 대하여 시설의 운영상황에 대하여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,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, 회계 등을 감사할 수 있다. 이 경우 위탁운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.

- ② 위탁운영자는 매 회계연도의 세입·세출에 대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1월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- ③ 시장은 위탁운영자에 대한 감사·지도·감독을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.

제4장 수련시설의 이용

제14조(수련시설의 이용자)수련시설의 이용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- 1. 청소년 및 청소년 단체 등
- 2. 개인 또는 단체
- 3.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자

제15조(이용 신청 및 허가 등)① 수련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 수련시설 운영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이용을 신청하여야 하며, 그 신청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하는 경우에도 같으며, 수련시설 운영자는 해당시설 이용 허가 여부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결정 통보하여야 한다.

- ② 수련시설 운영자는 수련시설의 이용 신청이 경합될 때에는 신청 접수 차례대로 이를 허가하되,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 또는 활동을 우선하여 허가를 할 수 있다.
- 1. 수련시설 자체행사
- 2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주관 청소년 활동
- 3. 학교, 청소년시설, 청소년 단체가 행하는 청소년 활동

제**16조(이용허가의 제한 등)**수련시설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이용허가를 제한 또는 취소할 수 있다.

- 1.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
- 2. 수련시설의 안전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
- 3. 이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
- 4.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
- 5. 공익상 또는 운영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
- 6. 특정 종교의 포교활동이나 정치적 목적의 행사라고 인정될 때
- 7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제17조(이용료 등)① 수련시설운영자는 별표 2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수련시설의 이용자에게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.

- ② 수련시설운영자는 수련시설 이용요금을 수련시설의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.
- ③ 수련시설 운영자는 프로그램의 변경 등의 사유로 수련시설의 이용료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- ④ 위탁운영자는 수련시설 운영과 관련한 수입금을 분기별(1,4,7,10월)로 하남시 세입으로 납입하여야 한다.

제**18조(이용료의 감면 등)**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용자에게 이용료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.

- 1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와 그 가족
- 2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
- 3. 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청소년
- 4.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한부모 가정
- 5.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라 장애인 등으로 등록된 사람
-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의 경우에는 이용료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.
- 1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주관하는 행사
- 2.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- ③ 시장은「하남시 다자녀 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」에 따른 다자녀 가정에 해당하는 이용자에게 이용료 100분의 30을 감면할 수 있다.<신설 2021.9.24.>

제19조(이용료 등의 반환)① 납부된 이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전부를 반환해야 한다.

1.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때

- 2. 수련시설의 특별한 사정으로 이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때
- 3. 수련시설 이용 신청자가 이용 개시 5일 전까지 신청 수리 취소원을 제출하였을 경우
- ② 이용료 반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.

제20조(휴관)수련시설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.

- 1. 매주 월요일
- 2. 「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」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<개정, 2023.4.13.>

제5장 보칙

제**21조(준용)**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「청소년 기본법」,「청소년활동 진흥법」,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등 관계법령을 따르며, 위·수탁사무에 관한 사항은 「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를 따른다.

제22조(시행규칙)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<제1748호, 2019.12.27.>

제1조(시행일)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이 조례 시행 당시 구성·운영 중인 청소년수련관 및 청소년 문화의집은 이 조례에 따라 구성·운영된 것으로 본다.

제3조(다른 조례의 폐지)다음 각 호의 조례는 각각 폐지한다.

- 1. 「하남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」
- 2. 「하남시 청소년 문화의집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」

부칙<제1973호, 2021.9.24.>

제1조(시행일)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례)제18조제3항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에 이용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부칙<제2153호, 2023.4.13.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<다른조례의 개정(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) 2023.5.1.>

제1조(시행일)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**2조(경과조치)**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위탁운영 하였거나 위탁운영 중인 사무는 이 조례에 따른 위탁사무로 보며, 해당 위탁기간은 계속된다.

제**3조(적용례)**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위탁운영 중인 사무에 대해서는 그 규정을 적용하며, 시장은 다른 조례를 제·개정하여 처음으로 위탁하는 사무에 관해서도 이 조례에 따라 수탁자를 미리 선정하고 해당 조례의 시행일부터 위탁을 개시할 수 있다.

제4조(다른 조례의 개정)[1] 하남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조 중 "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"를 "하남시 사무위탁 조례"로 한다.

[2] 하남시 체육시설의 관리、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8조제1항 중 "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"를 "하남시 사무위탁 조례"로 한다.

[3] 하남시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3항 중 "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"를 "하남시 사무위탁 조례"로 한다.

제21조 중 "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"를 "하남시 사무위탁 조례"로 한다.

[4] 하남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조제1항 중 "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"를 "하남시 사무위탁 조례"로 한다.

[5] 하남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2항 중 "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"를 "하남시 사무위탁 조례"로 한다.

[6] 하남시 한방 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2항 중 "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"를 "하남시 사무위탁 조례"로 한다.

```
[7] 하남시 민주시민교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10조제2항 중 "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"를 "하남시 사무위탁 조례"로 한다.
[8] 하남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3조제2항 중 "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"를 "하남시 사무위탁 조례"로 한다.
[9] 하남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9조제4항 중 "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"를 "하남시 사무위탁 조례"로 한다.
[10] 하남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·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17조 중 "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"를 "하남시 사무위탁 조례"로 한다.
[11] 하남시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13조제3항 중 "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"를 "하남시 사무위탁 조례"로 한다.
[12] 하남시 장애 및 장애위험군 영유아발달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21조 중 "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"를 "하남시 사무위탁 조례"로 한다.
[13] 하남시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6조 중 "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"를 "하남시 사무위탁 조례"로 한다.
[14] 하남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6조제2항 중 "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"를 "하남시 사무위탁 조례"로 한다.
[15] 하남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15조제6항 중 "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"를 "하남시 사무위탁 조례"로 한다.
[16] 하남시 주차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5조제1항제5호 중 "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"를 "하남시 사무위탁 조례"로 한다.
제5조제5항 중 "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"를 "하남시 사무위탁 조례"로 한다.
[17] 하남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19조제3항 중 "「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제8조에 따른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
원회"를 "「하남시 사무위탁 조례」제9조에 따른 사무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"로 한다.
제19조제5항 중 "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"를 "하남시 사무위탁 조례"로 한다.
[18] 하남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17조제4항 중 "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"를 "하남시 사무위탁 조례"로 한다.
[19] 하남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6조제4항 중 "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"를 "하남시 사무위탁 조례"로 한다.
제20조 중 "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"를 "하남시 사무위탁 조례"로 한다.
[20] 하남시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14조 중 "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"를 "하남시 사무위탁 조례"로 한다.
[21] 하남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24조제2항 중 "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"를 "하남시 사무위탁 조례"로 한다.
[22] 하남시 학교급식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4조제2항 중 "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"를 "하남시 사무위탁 조례"로 한다.
[23] 하남시 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6조제2항 중 "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"를 "하남시 사무위탁 조례"로 한다.
[24] 하남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다.
제9조제5항 중 "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"를 "하남시 사무위탁 조례"로 한다.
[25] 하남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11조제3항 중 "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"를 "하남시 사무위탁 조례"로 한다.
[26] 하남시 유아숲체험원 등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```

제6조제4항 중 "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"를 "하남시 사무위탁 조례"로 한다. [27] 하남시 안전도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3항 중 "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"를 "하남시 사무위탁 조례"로 한다. [28] 하남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제2항 중 "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"를 "하남시 사무위탁 조례"로 한다. [29] 하남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8조제2항 중 "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"를 "하남시 사무위탁 조례"로 한다. [30] 하남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2항 중 "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"를 "하남시 사무위탁 조례"로 한다.

[31] 하남시 고혈압·당뇨병 등록·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4항 중 "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"를 "하남시 사무위탁 조례"로 한다.

[32] 하남시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2항 중 "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"를 "하남시 사무위탁 조례"로 한다. [33] 하남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3조제4항 중 "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"를 "하남시 사무위탁 조례"로 한다. [34] 하남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제1항 중 "하남시 사무의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"를 "하남시 사무위탁 조례"로 한다. [35] 하남시 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2조 중 "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"를 "하남시 사무위탁 조례"로 한다.

[36] 하남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 중 "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"를 "하남시 사무위탁 조례"로 한다.

[37] 하남시 무한돌봄 종합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3항 중 "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"를 "하남시 사무위탁 조례"로 한다. [38] 하남시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 중 "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"를 "하남시 사무위탁 조례"로 한다.

[39] 하남시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1조제2항 중 "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"를 "하남시 사무위탁 조례"로 한다. [40] 하남시 친환경 유용미생물 생산 및 공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제2항 중 "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"를 "하남시 사무위탁 조례"로 한다. [41] 하남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2항 중 "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"를 "하남시 사무위탁 조례"로 한다. [42] 하남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6조제2항 중 "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"를 "하남시 사무위탁 조례"로 한다. [43] 하남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2항 중 "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"를 "하남시 사무위탁 조례"로 한다. [44] 하남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2조제6항 중 "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"를 "하남시 사무위탁 조례"로 한다. [45] 하남시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4조제3항 중 "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"를 "하남시 사무위탁 조례"로 한다. [46] 하남시 택시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 중 "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"를 "하남시 사무위탁 조례"로 한다.

[47] 하남시 청소년 공부방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7조 중 "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"를 "하남시 사무위탁 조례"로 한다.

[48] 하남시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7조 중 "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"를 "하남시 사무위탁 조례"로 한다.

[49] 하남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 중 "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"를 "하남시 사무위탁 조례"로 한다.

[50] 하남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2항 중 "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"를 "하남시 사무위탁 조례"로 한다.

[51] 하남시 아동 돌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4항 중 "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"를 "하남시 사무위탁 조례"로 한다.

[52] 하남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점검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3항 중 "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"를 "하남시 사무위탁 조례"로 한다.

[53] 하남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제4항 중 "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"를 "하남시 사무위탁 조례"로 한다. [54] 하남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0조제3항 중 "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"를 "하남시 사무위탁 조례"로 한다. [55] 하남시 평화통일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2항 중 "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"를 "하남시 사무위탁 조례"로 한다. [56] 하남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、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4항 중 "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"를 "하남시 사무위탁 조례"로 한다. [57] 하남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9조제2항 중 "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"를 "하남시 사무위탁 조례"로 한다. [58] 하남시 현충탑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 중 "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"를 "하남시 사무위탁 조례"로 한다.

하남시 사무위탁 조례

[시행 2023. 5. 1.] [경기도하남시조례 제2168호, 2023. 5. 1., 일부개정]

경기도 하남시(기획조정관), 031-790-5472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제1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하남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공공、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그 효율적、통일적 사무 처리를 위하여 사무위탁에 필요한 기본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개정 2023.5.1.>

제2조(정의)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- 1. "위탁"이란 하남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하남시(이하 "시"라 한다) 가 아닌 수탁기관에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.<개정 2021.1.12., 2023.5.1.>
- 2. "위탁사무"라 시장이 수탁기관에게 위탁하는 사무를 말한다.<신설 2023.5.1.>
- 3. "수탁기관"이란 위탁사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·공공단체 및 민간의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하다.<개정 2023.5.1.>
- 4. "재위탁"이란 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.<개정 2023.5.1.>
- 5. "재계약"이란 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.<개정 2023.5.1.>

제3조(적용범위)사무의 위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.<개정 2023.5.1.>

제2장 위탁 대상사무 선정

제4조(위탁 대상사무의 기준)시장은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 업무 등 시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. 다만,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.<개정 2023.5.1.>

- 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- 2.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<개정 2023.5.1.>
- 3.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
- 4.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

제5조(위탁의 적정성 검토)시장은 사무를 위탁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.<개정 2023.5.1.>

- 1.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
- 2.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
- 3. 경제적 효율성
- 4. 수탁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<개정 2023.5.1.>
- 5. 성과 측정의 용이성
- 6.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
- 7. 그 밖에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위탁의 적정성 검토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<개정 2023.5.1.>

제**6조(위탁계획)**① 시장은 제5조의 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
- ② 위탁계획에는 위탁사무의 명칭 및 위탁근거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- 1. 목적, 필요성, 위탁기간 및 조건

- 2. 범위, 내용 및 타당성
- 3. 보조 및 지원예산
- 4. 추진방법 및 일정
- 5. 기대효과
- 6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③ 시장은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고자 할 경우에도 해당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 다만, 제2항 각 호 중 변경된 사항과 그에 필요한 사항만을 포함시킬 수 있다. <본조신설 2023.5.1.>

제7조(의회 동의 등)① 시장은 자치사무에 해당하는 사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는 하남시의회(이하 "의회"라한다)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<개정 2023.5.1.>

- ② 시장은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만료일 90일 전까지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.<신설 2023.5.1.>
-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.
- 1. 수탁기간 1년 이하인 일회성 사무로서 의회가 의결한 예산에 이미 반영되어 있는 사무
- 2. 청소, 방호 등 연간 반복적 사무로서 의회가 의결한 예산에 이미 반영되어 있는 사무
-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- 1. 위탁사무명
- 2. 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<개정 2023.5.1.>
- 3. 위탁사무 내용
- 4. 위탁시설 개요(소재지, 규모, 지원시설, 위치도)
- 5. 위탁기간<개정 2023.5.1.>
- 6. 수탁자 선정방식
- 7.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
- 8. 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<개정 2023.5.1.>
- 9. 재계약의 경우 성과평가 결과
- 10. 기타 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<개정 2023.5.1.>

제**8조(수탁기관의 선정)**<개정 2023.5.1.>① 시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.

- 1. 인력과 기구, 재정부담 능력
- 2. 시설과 장비, 기술보유 능력
- 3. 수탁기관의 책임능력과 공신력
- 4.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제31조에 따른 수탁기관의 최근 2년간 입찰참가자 격 제한(부정당업자 제재) 사실
- 5. 수탁기관의 비용절감 능력
- 6.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업무 관련성 및 사업수행 실적
- ② 시장은 수탁기관을 선정(재위탁 및 재계약을 포함한다)하려는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하고, 제8조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<개정 2021.1.12.>
- ③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, 심사위원회의 실적 평가 등 심의를 거쳐 재위탁 할 수 있다. 다만, 법령 등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.<개정 2021.1.12.>

제8조의2(선정방법 등)<개정 2023.5.1.>① 시장이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는 공고를 통한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집대상을 제한 할 수 있다.<신설 2021.1.12.>

1. 위탁사무의 전문성,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경쟁도입이 어려운 경우<신설 2021.1.12.>

<개정 2023.5.1.>

- 2. 위탁사무가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고도의 공신력이 필요한 경우<신설 **2021.1.12.>** <개정 2023.5.1.>
- 3. 그 밖에 제1호, 제2호에 준하는 사유 등으로 수탁기관의 모집대상을 제한하려는 경우로서 시장이 정하는 경우<신설 **2021.1.12.>**
- ② 시장은 수탁기관 선정 공고시 선정기준, 심사항목 및 배점 등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.<신설 2021.1.12.>

제9조(사무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)<개정 2023.5.1.>① 수탁기관 선정, 성과평가, 재위탁, 재계약 관련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하남시 사무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(이하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<개정 2021.1.12., 2023.5.1.>

- 1. 위탁의 타당성 및 필요성 등 심사<신설 2021.1.12.>
- , <개정 2023.5.1.>
- 2. 수탁기관 선정 시 적격자 심의<신설 2021.1.12.>
- 3. 운영성과 및 종사자 처우개선 평가<신설 2021.1.12.>
- 4. 수탁기관에 대한 소요비용 지원<신설 2021.1.12.>
- 5. 그 밖에 시장이 위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<신설 2021.1.12.>
- , <개정 2023.5.1.>
-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위탁사무의 심사가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.<개정2023.5.1.>
- 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,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 이내로 하고,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- 1. 하남시의회에서 추천하는 하남시의회 의원
- 2. 변호사 · 공인회계사 · 건축사 · 기술사 · 노무사 또는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<개정 2023.5.1.>
- 3. 대학에서 해당 위탁사무 분야와 관련된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<개정 2023.5.1.>
- 4. 관련 분야 10년 이상 실무경력자 및 위탁 전문가, 사회적경제 전문가<개정 2023.5.1.>
- 5. 그 밖에 위원회 심의의 전문성·공정성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- ④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- ⑤ 위원회의 원만한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 1인을 두되, 간사는 위탁사무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.
- ⑥ 위원회는 사업계획서의 심사와 현장 확인 및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
- ⑦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⑧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「하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 <개정 2021.1.12.,2021.3.12.>

제10조(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)<개정 2023.5.1.>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.

- 1.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(당사자가 법인·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
- 2.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
- 3.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, 연구, 용역, 감정 등을 한 경우
- 4.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·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
- 5.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, 연구, 용역, 감정 등을 한 경우
- 6.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
- ② 해당 안건의 이해관계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,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.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-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.
- 제**11조(수탁기관 선정 및 이의신청)<**개정 **2023.5.1.>①** 시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.
- ② 수탁기관 선정 결과에 불복하는 자는 수탁기관 선정사실을 공고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서면 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.
-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다. 이 경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제9조를 준용한다.<개정 2023.5.1.>
- ④ 시장은 이의신청을 받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. 다만,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,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- 제**12조(계약체결 등)**<개정 **2023.5.1.>①** 시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하면 수탁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<개정 **2021.1.12.>**
- ② 계약서에는 수탁기관의 명칭(성명) 및 주소, 위탁기간, 위탁내용, 수탁자의 의무, 예산지원 한도액, 계약 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책임사항 및 의무이행 등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.<개정 2021.1.12.>
-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이 체결되면 수탁기관의 장으로부터 청렴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.<신설 2021.1.12.>
- 제13조(재계약)<개정 2023.5.1.>① 기존 수탁기관은 재계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120일 전까지 시장에게 재계약을 신청하여야 한다.
-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의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관리능력 등의 평가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.
-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재계약의 적정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제21조에 따른 위탁사업에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.
- 제14조(수탁기관의 의무)수탁기관은 위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- 1. 사무의 지연처리,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, 불공정한 사무처리 및 부당 징수행위 등을 하지 아니할 것<개정 2021.1.12.>
- 2. 위탁받은 목적 외에 위탁시설·장비·비용 등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<개정 2021.1.12.>
- 3. 관계법령, 이 조례 및 위탁협약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,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할 것
- 4. 위탁받은 시설을 증·개축하거나 신축하는 등의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을 것
- 5. 위탁받은 사무를 다른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다시 위탁하지 아니할 것
- 6. 위탁사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고용·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
- 제15조(위탁계약의 해지)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- 1. 수탁기관이 제14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
- 2. 수탁기관이 주요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
- 3. 수탁기관 지도·점검 결과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시정요구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<신설 2021.1.12.>
- 4. 수탁기관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스스로 취소 또는 해지를 원하는 경우<신설 2021.1.12.>
- 5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탁기관에 선정된 경우<신설 2021.1.12.>

- 6. 그 밖에 수탁기관 임·직원의 범죄행위 등으로 공익상 위탁 운영이 부적절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<신설 2021.1.12.>
- ② 시장이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기관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.
- ③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시설의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- ④ 위탁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수탁기관은 계약해지 후 2년 이내에 시의 사무위탁 공개모집에 참가할 수 없다. 단, 제1항제4호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. <신설 2021.1.12., 개정 2023.5.1.>

제3장 관리 운영

제16조(인계·인수)① 소관부서장은 위탁개시 전까지 시설물 현황·기구·물품 등의 목록을 작성하여 수탁기 관에 인계하여야 한다.

② 소관부서장은 위탁이 종료되거나 제15조에 따른 위탁계약의 해지 시에는 지체 없이 시설물 현황·기구· 물품 등의 목록과 수탁기관에서 생산한 문서 등을 수탁기관으로부터 인수받아야 한다.

제17조(운영지원)① 시장은 수탁기관이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,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.<개정 2023.5.1.>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게 하여야 하며, 이행의 보증방법 등에 관하여는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다.

제17조의2(사용료 정수 등)① 시장은 위탁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이용자 등에게 법령 등에서 정하는 사용료, 수수료, 비용 등(이하 "수입금"이라 한다)을 수탁기관이 징수하게 할 수 있다.<신설 2021.1.12.>

- ②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수입금을 징수할 때에는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<신설 2021.1.12.>
- ③ 시장은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시설운영과 관련한 수입금을 시장에게 납부하거나 시설운영에 사용하게 할 수 있다.<신설 2021.1.12.>

제**18조(사무편람)**①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·처리기간·처리과정·처리기준·구비서류·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·비치하여야 한다.

② 수탁기관은 제1항의 사무편람을 수탁협약 30일 이내에 작성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제19조(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)①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, 시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.

②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수탁기관의 명의로 한다.

제**20조(지도·점검 등)**①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.

- ②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지도·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, 지도·점검 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-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할 경우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.
- ④ 시장은 위탁사무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.
- ⑤ 시장은 감사 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 수탁기관에 시정을 요구하거나 관계 임·직원에 대한 문책을 요구할 수 있으며, 해당 사무의 취소 또는 정지 시킬 수 있다. <신설 2021.1.12.>

제21조(성과평가)① 시장은 위탁 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해 위탁기간의 만료 90일 전까지 위탁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. 다만,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평가 또는 감사 등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확인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.<개정 2021.1.12., 2023.5.1.>

-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를 전문평가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.
-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.

④ 시장은 성과평가에 따라 재계약·사무위탁 제한 등의 인센티브 또는 패널티를 부여할 수 있다. <신설 2021.1.12., 개정 2023.5.1.>

제22조(시행규칙)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<제1716호, 2019.10.1.>

제1조 (시행일)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(다른 조례와의 관계)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및 규칙에서 「하남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 조례」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 중 그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.

부칙<제1879호, 2021.1.12.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<제1900호, 2021.3.12.>(하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)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<제2168호, 2023.5.1.>

제1조(시행일)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위탁운영 하였거나 위탁운영 중인 사무는 이 조례에 따른 위탁사무로 보며, 해당 위탁기간은 계속된다.

제3조(적용례)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위탁운영 중인 사무에 대해서는 그 규정을 적용하며, 시장은 다른 조례를 제 · 개정하여 처음으로 위탁하는 사무에 관해서도 이 조례에 따라 수탁자를 미리 선정하고 해당 조례의 시행일부터 위탁을 개시할 수 있다.

제4조(다른 조례의 개정)[1] 하남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조 중 "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"를 "하남시 사무위탁 조례"로 한다.

[2] 하남시 체육시설의 관리、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8조제1항 중 "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"를 "하남시 사무위탁 조례"로 한다.

[3] 하남시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3항 중 "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"를 "하남시 사무위탁 조례"로 한다.

제21조 중 "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"를 "하남시 사무위탁 조례"로 한다.

[4] 하남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조제1항 중 "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"를 "하남시 사무위탁 조례"로 한다.

[5] 하남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2항 중 "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"를 "하남시 사무위탁 조례"로 한다.

[6] 하남시 한방 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2항 중 "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"를 "하남시 사무위탁 조례"로 한다.

[7] 하남시 민주시민교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2항 중 "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"를 "하남시 사무위탁 조례"로 한다.

[8] 하남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2항 중 "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"를 "하남시 사무위탁 조례"로 한다.

[9] 하남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4항 중 "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"를 "하남시 사무위탁 조례"로 한다.

[10] 하남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오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7조 중 "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"를 "하남시 사무위탁 조례"로 한다.

[11] 하남시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조제3항 중 "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"를 "하남시 사무위탁 조례"로 한다. [12] 하남시 장애 및 장애위험군 영유아발달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21조 중 "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"를 "하남시 사무위탁 조례"로 한다. [13] 하남시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6조 중 "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"를 "하남시 사무위탁 조례"로 한다. [14] 하남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6조제2항 중 "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"를 "하남시 사무위탁 조례"로 한다. [15] 하남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5조제6항 중 "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"를 "하남시 사무위탁 조례"로 한다. [16] 하남시 주차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5조제1항제5호 중 "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"를 "하남시 사무위탁 조례"로 한다. 제5조제5항 중 "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"를 "하남시 사무위탁 조례"로 한다. [17] 하남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9조제3항 중 "「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제8조에 따른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 원회"를 "「하남시 사무위탁 조례」제9조에 따른 사무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"로 한다. 제19조제5항 중 "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"를 "하남시 사무위탁 조례"로 한다. [18] 하남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7조제4항 중 "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"를 "하남시 사무위탁 조례"로 한다. [19] 하남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6조제4항 중 "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"를 "하남시 사무위탁 조례"로 한다. 제20조 중 "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"를 "하남시 사무위탁 조례"로 한다. [20] 하남시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4조 중 "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"를 "하남시 사무위탁 조례"로 한다. [21] 하남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24조제2항 중 "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"를 "하남시 사무위탁 조례"로 한다. [22] 하남시 학교급식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4조제2항 중 "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"를 "하남시 사무위탁 조례"로 한다. [23] 하남시 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6조제2항 중 "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"를 "하남시 사무위탁 조례"로 한다. [24] 하남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9조제5항 중 "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"를 "하남시 사무위탁 조례"로 한다. [25] 하남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1조제3항 중 "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"를 "하남시 사무위탁 조례"로 한다. [26] 하남시 유아숲체험원 등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6조제4항 중 "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"를 "하남시 사무위탁 조례"로 한다. [27] 하남시 안전도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8조제3항 중 "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"를 "하남시 사무위탁 조례"로 한다. [28] 하남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2조제2항 중 "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"를 "하남시 사무위탁 조례"로 한다. [29] 하남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8조제2항 중 "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"를 "하남시 사무위탁 조례"로 한다.

제6조제2항 중 "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"를 "하남시 사무위탁 조례"로 한다.

[30] 하남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[31] 하남시 고혈압·당뇨병 등록·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4항 중 "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"를 "하남시 사무위탁 조례"로 한다.

[32] 하남시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2항 중 "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"를 "하남시 사무위탁 조례"로 한다.

[33] 하남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3조제4항 중 "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"를 "하남시 사무위탁 조례"로 한다.

[34] 하남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제1항 중 "하남시 사무의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"를 "하남시 사무위탁 조례"로 한다. [35] 하남시 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2조 중 "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"를 "하남시 사무위탁 조례"로 한다.

[36] 하남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 중 "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"를 "하남시 사무위탁 조례"로 한다.

[37] 하남시 무한돌봄 종합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3항 중 "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"를 "하남시 사무위탁 조례"로 한다.

[38] 하남시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 중 "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"를 "하남시 사무위탁 조례"로 한다.

[39] 하남시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1조제2항 중 "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"를 "하남시 사무위탁 조례"로 한다.

[40] 하남시 친환경 유용미생물 생산 및 공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제2항 중 "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"를 "하남시 사무위탁 조례"로 한다.

[41] 하남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2항 중 "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"를 "하남시 사무위탁 조례"로 한다.

[42] 하남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6조제2항 중 "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"를 "하남시 사무위탁 조례"로 한다.

[43] 하남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2항 중 "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"를 "하남시 사무위탁 조례"로 한다.

[44] 하남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2조제6항 중 "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"를 "하남시 사무위탁 조례"로 한다.

[45] 하남시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4조제3항 중 "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"를 "하남시 사무위탁 조례"로 한다.

[46] 하남시 택시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 중 "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"를 "하남시 사무위탁 조례"로 한다.

[47] 하남시 청소년 공부방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7조 중 "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"를 "하남시 사무위탁 조례"로 한다.

[48] 하남시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7조 중 "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"를 "하남시 사무위탁 조례"로 한다.

[49] 하남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 중 "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"를 "하남시 사무위탁 조례"로 한다.

[50] 하남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2항 중 "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"를 "하남시 사무위탁 조례"로 한다.

[51] 하남시 아동 돌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4항 중 "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"를 "하남시 사무위탁 조례"로 한다.

[52] 하남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점검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3항 중 "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"를 "하남시 사무위탁 조례"로 한다. [53] 하남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제4항 중 "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"를 "하남시 사무위탁 조례"로 한다. [54] 하남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0조제3항 중 "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"를 "하남시 사무위탁 조례"로 한다. [55] 하남시 평화통일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2항 중 "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"를 "하남시 사무위탁 조례"로 한다. [56] 하남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、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4항 중 "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"를 "하남시 사무위탁 조례"로 한다. [57] 하남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9조제2항 중 "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"를 "하남시 사무위탁 조례"로 한다. [58] 하남시 현충탑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 중 "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"를 "하남시 사무위탁 조례"로 한다.